

# 서 면 답 변 서

(기획경제위원회)

일 자	질문의원	답 변 자	관련부서	비 고
94년 12월 1일 (제109회정기회)	윤 태 한	기획관리 실장	예산담당 관실	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

## 〈질문내용〉

각종 도비 보조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및 부담기준은

(보충질문)

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별, 지역별, 시군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

(지방재정 자립도와 도시지역 모든 여건을 하나하나 볼때 이를 배반적인 것이 많음)

## 〈답변내용〉

-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부담비율과 각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
- 다만 개별 사업단위로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업의 성격 및 자치단체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※ 시·군 보조내시자료 : 기 제출